# 성주군 지방공무원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의 안<br>번 호 | |
|---|---|

제출일자 : 2013년 6월 일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## 1. 개정이유

『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』일부개정에 따라(대통령령 제24302호, '13.1.9. 공포)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지급 조항을 신설하고 중앙행정기관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 하는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외 추가 지급 조항을 신설 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**가.**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조항 신설

・월 250,000원 특수업무수당 지급(2013.1.1부터 적용)

**나.** 중앙행정기관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외 추가 지급 조항 신설

・월 300,000원 직급보조비 외 추가 지급(2013.7.1부터 적용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

나. 예산조치 : 관련부서와 협의

다. 기 타

(1) 신・구조문 대비표 : 별 첨

(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(3) 입법예고(2013. 6. 14 ~ 6. 23) : 별도 의견 없음.

**성주군 조례 제 호**

# 성주군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공무원수당규정”을 “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”으로 한다.

제2조 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: 월 250,000원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(직급보조비 등)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영 별표 14의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에 따른 직급보조비 외에 월 300,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조 제3호의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, 제4조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 조 문 대 비 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에서 지방공무원(이하“공무원”이라 한다)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| 제1조(목적) ------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----------.<br>---------- |
| 제2조(의료업무 등의 수당)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 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.<br>1 · 2 (생 략)<br><신 설> | 제2조(의료업무 등의 수당) ---------.<br>1 · 2 (현행과 같음)<br>3.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:월 250,000원 |
| <신 설> | 제4조(직급보조비 등)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영 별표14의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에 따른 직급보조비 외에 월 300,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. |